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이행 점검·진단 및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지원기업 모집공고

공 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1.27)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사항은 ‘24.1.27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환경부는 “2024년 살생물제 중대재해법 제도이행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며,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컨설팅 지원기업을 모집하고자 공고합니다.

2024. 8. 5.

KOTITI시험연구원장

1. 신청기간 : ‘24. 8. 5(월) ~ 모집 완료시
2. 제출서류 : 공고문 내 제출서류 참고
3. 접수 및 문의처 : KOTITI시험연구원 환경안전CS팀
 - (E-mail) moon1520@kotiti.re.kr, ecomarketing@kotiti.re.kr
 - (전화) 02-3451-7115, 02-6191-6195
4. 세부내용 : 안내문 참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이행 점검·진단 및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지원기업 모집안내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사업장은 안전·보건 확보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사항은 '24.01.27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KOTITI시험연구원은 환경부의 「2024년 살생물제 중대재해법 제도이행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수행 주관기관으로 **살생물제(살생물 물질·제품·처리제품)** 또는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판매·유통**하는 **사업장의 제도이행 점검·진단** 및 이에 따른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희망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사 업 명** : 살생물제 취급사업장 제도이행 진단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지원

□ **사업배경 및 목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및 적용유예기간 종료('24.1.26.)에 따라 50인 미만의 살생물제(살생물물질·제품*·처리제품**) 또는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판매·유통 하는 사업장도 안전·보건 확보 등의 의무이행 필요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품, 구제제품, 보존·보존처리제품에 해당하거나 살생물물질이 포함된 제품이 살생물제품 유형(살균제, 기피제, 살충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

** 제품의 주된 목적 이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제품(보존처리된 에어컨 필터, 가죽, 플라스틱, 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② 관계법령 의무이행 및 점검
③ 의무교육 실시 및 점검	④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8조제4호에 따른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우는 제외

- 또한 살생물제 또는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판매·유통하는 사업장은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학 3법) 안전기준 등의 법정 의무사항 이행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이에, 살생물제 또는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판매·유통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화학 3법 이행 점검·진단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맞춤형 컨설팅 제공 사업을 추진

□ 지원대상

- 살생물제(살생물 물질·제품·처리제품) 또는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판매·유통 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화학 3법* 및 중대재해법 이행 실태 점검·진단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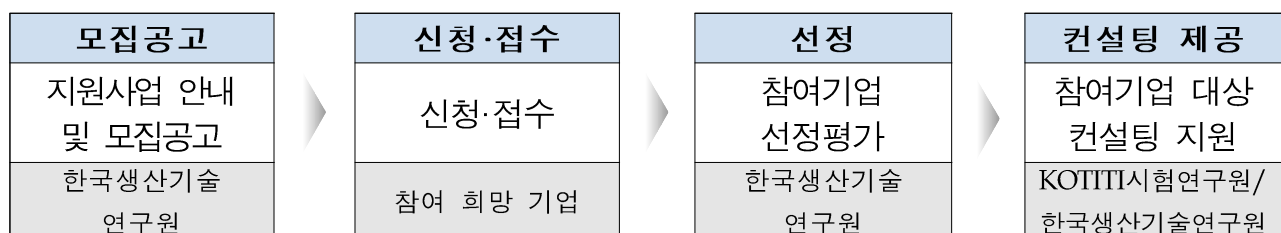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제품안전법

- 화학제품안전법 중심의 화학 3법 및 안전·보건 확보 이행수준 점검·진단

○ 화학 3법 통합 이행 절차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표준업무절차 수립) 기업의 제품 기획·개발·구매·생산·검사·출하 단계에 이르는 전과정의 업무처리 절차에 화학 3법 통합 이행 업무를 추가하여 전사 차원의 '화학 3법 표준 업무절차서' 수립·제공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계획서 제공) 화학 3법 및 중대재해법 통합 대응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유해·위험요인 관리대책 자가 진단 및 개선계획 등을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계획서의 작성 및 이행 지원

□ 지원절차



※ 국내 중소·영세 제조기업 중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미확보 기업을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

※ 컨설팅 세부절차는 별첨자료 참고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08. 05. (월) ~ 모집 완료시

○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 1부 등

- 유의사항 :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신청서류 제출 시 반드시 발급 일자 및 최신본 여부 확인하여 제출

구분	신청서류	비고
1	참여신청서	[붙임 1]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붙임 2]
3	중소기업 확인서	정부기관 발급본
4	사업자등록증	
5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6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

○ 제출방법 : E-mail 접수(yel@kitech.re.kr)

□ 문의처

○ KOTITI시험연구원 김유진 주임연구원(02-6191-6195, yj_kim@kotiti.re.kr)

○ KOTITI시험연구원 문일웅 선임연구원(02-6191-6106, moon1520@kotiti.re.kr)

별첨 컨설팅 세부 절차 및 내용

□ 제도이행 점검·진단 및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세부절차 및 내용

○ 화학 3법 및 중대재해법 이행 실태 점검·진단 지원

-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화학제품안전법을 중심으로 화학 3법 및 안전·보건 확보 이행수준 점검·진단 지원

추진단계	수행 내용	각 수행내용별 담당자		
		주관기관	수행기관	참여기업
STEP 1	· 사전정보조사 - 사전정보조사지는 이메일 송부 및 작성방법 안내	-	-	○
↓				
STEP 2	· 화학물질 인벤토리 제공 및 작성방법 안내 - 화학 3법에 대한 기업의 의무이행사항 조사 자료로 사업장 취급 화학물질 정보 작성 양식 제공/안내	-	○	-
↓				
STEP 3	· 화학물질 인벤토리 작성 - 참여기업은 사업장 취급 화학물질 정보를 화학물질 인벤토리 양식에 작성 및 제출	-	-	○
↓				
STEP 4	· 화학물질 인벤토리 분석 - 화학물질 인벤토리를 통한 화학3법(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등) 이행 의무사항 분석	○	○	-
↓				
STEP 5	· 지원사업 설명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 중대재해처벌법 및 원료제조물분야 중대재해 소개	-	○	-
↓				
STEP 6	· 중대재해 이행현황 점검 - 화학 3법 및 안전·보건 점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한 기업의 화학 3법 이행여부 파악	-	○	○
↓				
STEP 7	· 사업장 AS-IS 업무프로세스 수립 - 실무담당자 인터뷰를 통한 제품기획, 개발, 구매, 생산, 출고에 이르는 현재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 파악	-	○	○
↓				
STEP 8	· 사업장 점검·진단보고서 작성 - 화학물질 인벤토리 분석 및 중대재해 이행 현황 점검 결과를 통한 사업장 점검·진단보고서 작성	-	○	-
↓				
STEP 9	· 사업장 점검·진단보고서 검토 및 제공 - 사업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증 절차에 따라 결과자료 검토 후 참여기업에 제공	○	-	-
참여기업 제공 컨설팅 결과물		- 화학 3법 및 중대재해법 이행실태 점검·진단 보고서 1건 - 현재 기업의 업무(AS-IS) 프로세스 맵 1건		

○ 화학 3법 통합 이행 절차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법령 점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취급형태 등이 고려된 기업 맞춤형 개선방안 제공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추진단계	수행 내용	결과물		
		주관기관	수행기관	참여기업
STEP 1	· 화학 3법 통합대응 TO-BE 업무 프로세스 구축 - AS-IS 프로세스 맵에 각 부서별 화학 3법(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의무 이행업무 추가	-	○	○
↓				
STEP 2	· 화학 3법 대응 절차서 구축 - 화학 3법 대응 TO-BE 프로세스 맵을 통한 문서화 및 표준 양식 제공	-	○	-
↓				
STEP 3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교육 - 임직원 대상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교육(교육시간은 기업 요구사항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공)	-	○	-
↓				
STEP 4	· 위험성 평가 - 위험측면 도출 및 분석, 위험성평가, 위험요소 제거 등 목표관리	-	○	○
↓				
STEP 5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모니터링 - 업무절차 등 표준화 작업, 시스템 개선 및 적용	-	○	-
↓				
STEP 6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 안전·보건 관리체계, 계획 수립 등	-	○	○
↓				
STEP 7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교육 및 사업완료보고 -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착지원 및 최종 사업 완료보고	-	○	-
↓				
STEP 8	· 컨설팅 결과보고서 작성 - 컨설팅 결과보고서 작성	-	○	-
↓				
STEP 9	· 컨설팅 결과보고서 검토 및 제공 - 사업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증 절차에 따라 결과자료 검토 후 참여기업에 제공	○	○	-
↓				
STEP 10	· 컨설팅 만족도 조사 - 컨설팅 만족도 및 법령 대응 애로사항 취합	○	○	-
참여기업 제공 컨설팅 결과물		- TO-BE 업무프로세스 맵 1건 - 화학 3법 대응 절차서 및 표준 업무양식 1Set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절차서/기준서 1Set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1건 - 컨설팅 최종 결과보고서 1건		

※ 향후 참여기업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등) 취득이 가능하도록 구성